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등급갱신 및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방문요양(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방문목욕, 지역사회 연계 등의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대상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대상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타사유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원 인수인으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을 계약의 대리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서비스 제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서비스 제공내용

다음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법(2019.12.12. 시행)에 따른 요양업무를 담당한다.

1)개인위생(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몸 씻기 등)
2)영양관리(식사도움 등)
3)이동도움(체위변경, 이동도움, 보장구 사용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이용하기 등)
4)인지활동 지원(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5)인지관리지원(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6)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7)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8)지역사회자원연계 등

바.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하며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6%, 9% 등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급여비용 부담 세부내역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85%(일반) 91%(감경대상) 94%(감경대상) 100%(기초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됨
본인 부담금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준)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9%(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6%(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0%(기초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월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이용 월의 다음 달 기관에서 정한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방문 또는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급여비용 명세서)을 발부한다.
7) 2020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 단,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만 가능함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원)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 단,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야간)은 표준수가의 20%를 가산하며,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회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으로 급여를 제공 할 수 있다. (2020.01.시행)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목욕방법	차량내목욕		차량이용(가정내)		차량 미이용	
제공시간	40~60분	60분이상	40~60분	60분이상	40~60분	60분이상
수가	59,570	74,470	53,720	67,150	33,540	41,930

※ 본기관은 차량 미 소유 기관으로 차량 미이용 수가에 준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함.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계약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권리

②기관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한 알권리

③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욕구변화에 따른 상담 및 상담내용의 급여내용 반영을 요청할 권리

2)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한 요구 금지 의무)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한 정보 제공(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보유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포함)

⑤ 수급자의 신변,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등급인정서 재발급,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이 재 발급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함

⑦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3)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② 급여 제공 중 어르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급여제공직원의 업무 수행도 확인 및 점검

④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개인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⑤ 이용관련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⑥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⑦ 수급자의 가정 내 집기류 분실, 파손 방지 또는 수급자 부상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직원 교육 등

⑧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관계없는 요청은 거절 할 수 있음)

3.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거나 입원, 사망, 타 기관 입소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외출 등의 사유로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6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그 외에 시설장이 서비스 제공 중단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할 경우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야 한다.
2)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